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알림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동포들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동포 체류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법무부장관

【전체일정】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23. 5. 15.(월) ~ 5. 24.(수)	10일간 우편접수
심의위원회 준비·개최	'23. 5. 29.(월) ~ 6. 23.(금)	서류검토·실태조사 등
지정 공고	'23. 6. 26.(월)	법무부 홈페이지
위촉 및 지정서 교부	'23. 6. 29.(목)	예정

1. 공모 개요

○ 목 적 :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민·관 협의체 구성

○ 지원자격 :

① 현재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운영기관

※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② 최근 3년 이내 국내 동포에 대한 고충·취업상담 등 사회적응 지원 경험이 있고, 아래 기능 수행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동포들의 출입국, 체류 관련 제도 안내 및 관련 동포정책 홍보
- ▶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
- ▶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관련 업무 수행
- ▶ 기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지정기간 : '23. 7. 1.부터 '25. 6. 30.까지(2년)

2. 접 수

○ 접수기간 : '23. 5. 15.(월)부터 '23. 5. 24.(수)까지 / 10일 간

○ 접수방법 : 본 공고문에 첨부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신청서'와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계획서' 및 기타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수기간 내 도착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유의

- ①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첨부 1】
- ②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첨부 2】
-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④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
- ⑤ 보유 건축물·시설물 확인 가능 서류(등기부등본 등)
- ⑥ 상근 상담직원 운영 여부 확인 가능 서류(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
- ⑦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대책

<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소재지) 보장대상 시설물 등 소재지 주소가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장소와 일치하여야 함
- (보장기간) 사업개시일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함
 - ※ 단, 공모일 기준 유효하나 '23년 말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보며, 추후 기간 갱신된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보장금액) 기관 설립규정에 따른 별도 보험 가입이 없는 경우 담보사항으로 1인당 1억 원 이상, 사고당 3억 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별도가입여부)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보험 내 담보사항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별도 가입 불필요

○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13809)

법무부 체류관리과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담당자 앞

○ 접수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3)

3. 신청 기본요건 및 심사절차

○ 기본요건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동포지원을 위한 적합한 건축물을 갖추고 있을 것
- 건축물이 재해, 재난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상근 상담직원을 3인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3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쉼터 시설을 갖출 것

※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포지원의 상징성, 지역적 특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단, 보험 가입에 관한 요건은 반드시 충족 필요)

○ 심사절차

- 서류심사 :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적격성 여부 확인

※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심사 : '동포체류지원센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 최종지정 : 법무부 최종 지정

4. 공모결과 발표

○ '23. 6. 26.(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

※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5. 준수 사항

○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는 법무부의 동포지원정책을 준수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동포체류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의 추진이 부진·부실한 경우, 기타 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기관·단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첨부】 1.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2.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첨부 1】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단체명			단체종류	비영리		
대표자			연락처			
단체등록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직원현황		상근(명)				
		비상근(명)				
		자원봉사자(명)				
시설현황		전체(㎡)				
		컴터(㎡)			수용가능인원	
		방 수			월평균수용인원	
지난 최근 2년간 주요 실적						
사업명		내용		성과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정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관·단체의 약도 및 시설배치도 등						

【첨부 2】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사업명	주요내용	운영목표	추진시기

본 기관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바 본 계획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지정신청인
(서명 또는 인)